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전 임직원]

BHI(주)

## 발간사

임직원 여러분,

우리 BHI는 지난 '23년 2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을 선언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이해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도입 및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BHI는 지난 25년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률을 준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거래문화와 거래질서를 위한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우리 BHI와 협력사들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사회적 규범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정거래에 대해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준수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회사는 공정거래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은 본 편람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 편람이 임직원 여러분들께 공정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당사의 공정거래 문화정착에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편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얻어지는 개인과 회사의 사소한 이익은 향후 개인과 회사에 큰 고난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거래 법령준수를 통해 우리 BHI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큰 자산을 우선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내외부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우종인**

# 목차

I.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3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개요.....	4
1.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4
1.2. CP 도입의 취지.....	4
2. CP의 핵심 8 요소.....	5
3. BHI의 자율준수프로그램.....	7
III. 공정거래업무 유의사항 - 공정거래법.....	8
1. 부당한 지원행위.....	9
2.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16
3. 부당한 공동행위.....	29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36
IV.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44
1. 공정거래법 관련 체크리스트.....	45
1.1. 부당한 지원행위.....	45
1.2. 불공정거래행위.....	46
1.3. 부당한 공동행위.....	48
1.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50

# **I.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개요

## 1.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이해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도입 및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하며,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 1.2. CP 도입의 취지

### 1.2.1. 대내외 신인도 제고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 1.2.2. 법위반에 따른 손실발생 사전 예방

- 법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 관리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2. CP의 핵심 8요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P의 구성요건, 평가기준, 모범적 설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CP의 구성요소로 아래의 8가지 사항을 규정하였다.

### 2.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2.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2.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2.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세부지침서로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2.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임직원들이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6. 사전감시체계 구축**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 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2.7.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법령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관련 법령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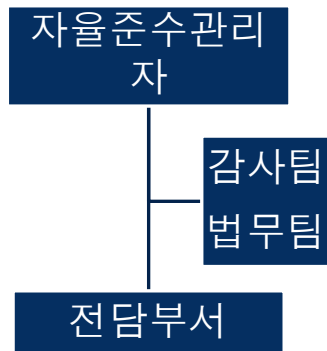
## **2.8.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영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BHI 의 자율준수프로그램

#### 3.1. 자율준수관리자 및 전담부서

- 조직도



- 자율준수관리자: 전략기획실장 이창희 전무이사
- 자율준수 전담부서: 전략기획그룹 기획팀

#### 3.2. CP 운영규정

회사는 CP 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CP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 규정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2023. 02. 28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영을 위한 최초 제정
2023. 07. 17	위험성평가 명시, 제재기준 명시, 기타 오탈자 수정



**III.    공정거래업무 유의사항**  
**-   공정거래법**

# 1. 부당한 지원행위

## 1.1. 부당한 지원행위

- 사업자 간,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 부당한 지원행위란?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9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9)

- 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상품·용역, 인력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통행세)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 지원행위의 예시

####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회계처리 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함
-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제 3 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 3 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 3 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 1 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 1 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 1 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고가 임차]
-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주요 위반 사례] – 자금지원행위 사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사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 8. 11. ~ 2017. 8. 11. 기간 동안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자기가 소유한 우리은행 750 억원의 정기예금을 코스비전에게 담보로 무상 제공하였음. 코스비전은 위 담보를 이용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600 억원의 시설자금을 1.72% ~ 2.01%의 금리로 5 회에 걸쳐 차입하였음.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차입 시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0.32%p 낮은 금리로서 개별정상금리와 금리차 비율이 최소 13.7%에서 최대 15.7%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의 이 사건 담보제공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주요 위반 사례] – 인력지원행위 사례**

**삼양식품의 사례**

삼양식품은 1995 년부터 2015 년 3 월까지 라○○ 등 자신의 직원 11 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음.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음. 삼양식품 소속인 이○○는 2007. 5. 31.부터 2011. 3. 28.까지, 그리고 박○○은 2011. 3. 29.부터 2015. 3. 31 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음.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 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음.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 백만원)을 부과하였음.

**[주요 위반 사례] – 물량지원행위 사례**

**삼성그룹의 사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및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그룹 미전실의 개입 하에 2013 년도부터 2019 년도까지 거래상대방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급식물량 100%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 개사가 2013 년도부터 2019 년도까지 삼성웰스토리와 급식거래 물량이 식수 연평균 5,500 만식, 연평균 매출액 3,277 억의 삼성웰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28.8%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고, 식재료비 마진 보전 및 인건비를 별도 협의 없이도 매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총 2,349 억원, 삼성전자와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주요 위반 사례] – 통행세지원 사례**

**하이트진로의 사례**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엔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엔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음.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엔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엔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음. 특히, 서영이엔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함.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 2 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하였음.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엔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 년 4 월 ~ 2017 년 9 월)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주)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지원주체의 계열사간 내부 시장을 활용한 지원 행위를 통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 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⑤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 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 2 조 제 8 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7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1.2. 위반 시 제재

구분	내용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 24 조).
과징금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7 호) 또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 2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 23 조의 2 제 1 항 제 3 호)를 한 사업자(지원주체) 및 그 상대방(지원객체)에게 각각 관련매출액의 100 분의 5 또는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24 조의 2 제 2 항)
형사고발	부당지원행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지원주체에게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공정거래법 제 66 조 제 1 항 제 9 의 2)
--	---

## 2.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 2.1. 부당한 거래 거절

-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에 위반됨

#### (가) 공동의 거래거절(법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1.가)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의 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 40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사업자들의 공동의 거래거절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것으로 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나) 그 밖의 거래거절(법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1. 나)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요 위반 사례] - 부당한 거래 거절**

**고주파간암치료기 거래 중지 관련 사례**

미국회사의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사업자인 원고는 원고를 통하여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거래회사가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였고 위 치료기와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거래회사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거래회사 간 계약이 거래회사가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오로지 원고로부터만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독점적·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거래회사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는 것이 위 계약에 위반된다거나 그 특수관계사가 제조한 제품이 원고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사제품이라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에 위

치료기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거래거절 이외의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회사로서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사정상 원고의 거래 거절 이후 대체공급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고의 거래거절은 거래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 2.2. 차별적 취급

-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가) 가격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2.가)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가격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거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을 가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거래조건 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2.나)**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 조건, 하자 책임기간 등)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거래조건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조건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2.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라) 집단적 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2.라)**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집단적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다음은 합리적 사유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되지 않음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위반 사례] - 차별적 취급
<p><b>씨제이씨지브이(주) 및 씨제이이엔엠(주)의 사례</b></p> <p>씨제이씨지브이(주)는 2010. 9.부터 2014. 4.까지 자신의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엔엠(주)가 공급하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회차를 편성하고, 더 큰 규모의 상영관을 배정하고, 극장 예고편 편성 비율을 높였으며, 씨제이이엔엠(주)가 배급하는 영화 선전 재료를 관객에게 노출되기 쉬운 자리에 배치하고, 상영관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영화를 고객에게 권유, 판매하게 하는 등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보다 유리하게 취급하였음. 또한 2011. 1.부터 2014. 3.까지 자신이 직영하는 상영관 또는 위탁 운영하는 상영관에서 배급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인근 상권과 연계되는 할인권을 발행하였음.</p> <p>[법원의 판단]</p> <p>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이때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저한 차별행위가 존재하고,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의도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li> <li>- 대법원은 영화의 수요 예측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임을 고려할 때 현저한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씨지브이(주)의 행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였음.</li> </ul> <p>2)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보기 위해서는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본인의 거래상의</li> </ul>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할인권 발행 행위로 매출이 증대되어 배급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2.3. 거래상 지위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요건

##### ① 지속적인 거래관계 존재

-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 투자여부 검토

##### ②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함

-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 비중 검토

※ 상기 요건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 (가) 구입강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6.가)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구입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나) 이익제공 강요(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6.나)**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판매목표 강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6. 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을 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불이익 제공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6. 라)**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마) 경영간섭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6. 마)**

-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경영간섭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 출납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주요 위반 사례]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p><b>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사례</b></p> <p>(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요기요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 경쟁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피심인이 그 차액을 일반소비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3년 7월경부터 2017. 2. 23.까지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달앱인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이나 경쟁 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였음.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요기요 또는 다른 주문경로의 판매가격이나 서비스 품목을 수정하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는 배달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하였음.</p> <p>공정위는 배달음식점에게 직접 주문 또는 경쟁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자기의 배달앱에서보다 더 유리한 가격 및 서비스 조건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징금 4억 6,800 만원을 부과하였음.</p>

## 2.4.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됨

### (가) 배타조건부 거래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7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7. 가)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 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실시기간(장기인 경우 경쟁에 영향 미칠 수 있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가 다음과 같은 합리성이 있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님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 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필수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7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7.나)**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 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p><b>[주요 위반 사례] - 구속조건부 거래</b></p>
<p><b>정식품의 사례</b></p> <p>(주)정식품은 2006. 9. 29.에 부산지역 전 대리점장들에 대하여 “인터넷 판매에 대한 제품입점 및 판매금지 고지”라는 제목으로 오프라인 대리점의 인터넷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07 년 하반기부터 월별로 개최되는 대리점장 회의 시 구두로 온라인판매를 지양하여 줄 것을 교육 전달하였음. 이후 (주)정식품은 2007. 5. 17. 신고인에 대하여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p> <p>공정위는 소속 대리점에게 특정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공지를 하거나 확인서 및 결의서를 받는 등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음.</p>

### 3. 부당한 공동행위

#### 3.1.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 40 조 제 1 항)

-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둘 이상의 사업자</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li></ul></li><li>◆ <b>합의의 존재</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li></ul></li></ul>
<p>※ <b>합의의 개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 간 의사 합의의 의미 (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li><li>-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정보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경쟁제한성</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li></ul></li></ul>

-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 경쟁방지, 경영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 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b>[주요 위반 사례] -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한 사례</b>
<p><b>소형 베어링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b></p> <p>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영업책임자 등 간에 수십 회의 의사 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을 우선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임.</p> <p>이러한 기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실제 철강용 베어링 입찰 건이 나오면 엔에스케이 코리아와 제이텍트 코리아는 다시 건별로 수주 형편을 나누어 납품할 물량비율을 배분하고 제출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p>

합의한 후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이하 '일본국 내 피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음.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 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됨.

**[주요 위반 사례] -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사례**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 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8.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B 호텔에 투숙하였으며, 동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배분함.

피심인들은 최종 합의한 바와 같이 2011. 11. 9. 농협중앙회 입찰장에서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는 피심인들만이 응찰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합의된 투찰물량대로 톤당 144,900 ~ 145,000 원의 투찰단가에 낙찰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주요 위반 사례] -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도록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2000 년 3 월 초경 피심인들의 본사 소매영업담당임직원은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이하에서는 이 경우의 정유사, 주유소를 각각 '원적사', '원적주유소'라 한다)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적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유치(Counter attack)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하였음.

피심인들은 2000년 3월 초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 관리 원칙(정유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한 기득권 인정 원칙)을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쟁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피심인들 간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서로 맞교환하였으며, 맞교환이 어려운 경우 동일 또는 유사수준의 다른 주유소를 교환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였음. 피심인들은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식적 모임이나 임직원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였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유통구조가 정유사 주도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고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의 시장집중도도 미미한 점, 상품 품질의 동질성이 높은 점 등은 공동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유치경쟁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정유사 간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유소의 거래 조건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경질유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의도나 목적을 보아도 경쟁제한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는 기존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고 있거나 종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였던 주유소와는 서로 거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직접 혹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상호 간에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3.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법 제 40 조 제 5 항)

-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은 추정제도를 두어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추정: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A)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B)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 성립요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 + 외형상 일치

##### (1) 정황증거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분건(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2)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요소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 (나) 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성립요건: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1) 외형상 일치

※ 상기 (가)항의, (2)외형상 일치 요건과 내용 동일

(2)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인정가능성 높음

○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인정 가능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합의 추정의 복멸

-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 3.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 40 조 제 2 항)

-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② 연구·기술개발
-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3.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

#### 3.4.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는 명할 수 있음.
- 관련매출액의 2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 3.4.2.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양벌규정**(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 3.4.3. 최대 3 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 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 3 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 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 56 조 제 3 항)

##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4.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 시장지배적 사업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법 제 2 조 제 3 호)

###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준

-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수 있음
  - **시장점유율**
    - 1 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3 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5% 이상 사업자(단, 시장점유율 10%미만인 자 제외)
  -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신규 진입 가능성은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쟁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자금력 등을 고려
  -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 사업자 간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짐
  - **시장봉쇄력**

- 당해 사업자의 원자재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50% 이상(3개이하 사업자 75%)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 자금력

-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력의 판단에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함

#### ■ 기타 고려요인

- 거래선 변경 가능 여부,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

### 4.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법 제 6 조)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  
(단, 시장점유율 10%미만인자는 제외)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 억원 미만 사업자 제외

### 4.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 (가) 가격남용 행위(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가격남용 행위의 판단기준
  - **가격**
    -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함
  - **수급의 변동**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객관적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 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판매관리비·영업외 비용 등의 변동을 말함
- **동종 또는 유사 업종**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 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하여 고려함
-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현저한 상승 또는 근소한 하락**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나) 출고조절 행위(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9 조 제 2 항)**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출고조절 행위의 판단기준**
  - **최근의 추세**
    -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출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단,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 유무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증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하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면서 타 사업자에게는 동 원재료의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
  -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 시행령 제 9 조 제 3 항)**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간접적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위한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하는 행위

**(라)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법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 시행령 제 9 조 제 4 항)**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기타 다음의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또는 기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마)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 시행령 제 9 조 제 5 항)**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의 판단기준**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 염가 또는 고가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유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 등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시설, 기술, 자본 및 원재료 등의 제공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도록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 기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는 경우
  - 권장 소비자가격(가격에 대한 명칭에 관계없이)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게 표시하는 경우
  - 기타 소비자의 재산상·신체상·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b>[주요 위반 사례] – 시장지배적지위를 통한 가격인상</b>
현대자동차의 가격인상 사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1999. 1. 20. 마이티 등 3종의 차량가격을 3.0~4.4%,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1999. 1. 25. 타우너 등 5종의 차량가격을 3.1~11.3% 각 인상하였음.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트럭시장은 94.6%, 버스시장은 74.2%에 달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공정위는 트럭 버스 부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는 6억 6,230만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는 4억 7,9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음.

#### **[주요 위반 사례] – 시장지배적지위**

##### **이베이지마켓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사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주)이베이지마켓은 2009. 10. 12. 부터 2009. 12. 3.까지 자신의 웹페이지에 입점한 판매자 중 경쟁사업자 (특히 11 번가)와 거래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서만 웹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최상단에 판매자의 상품을 노출시켜 주는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5 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여서는 안됨. 이때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거래 행위의 목적과 형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할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주)이베이지마켓의 시장점유율은 약 48% 정도로 독점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상품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11 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업체들도 비교적 짧은 시기 내에 다시 거래를 재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IV.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 1. 공정거래법 관련 체크리스트

## 1.1. 부당한 지원행위

세부체크 항목		체크결과		
		○	△	X
부당한 자금지원	■ 계열사 등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지는 않는가?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 등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는가?			
	■ 계열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자산지원	■ 특별한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포함시켜 통행세를 챙겨 주지는 않는가?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저가로 계열사 등에 매도, 임대하거나, 고가로 계열사 등으로부터 매수, 임차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인력지원	■ 계열사 등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지는 않는가?			

\* 작성 요령

○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점검항목에 해당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X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2. 불공정거래행위

세부체크 항목		체크결과		
		○	△	X
부당한 거래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사에 대하여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쟁사와 공동으로 구입을 거절하지는 않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사업자와 거래하지는 않는가?</li> </ul>			
차별적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지는 않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거나 우대하지는 않는가?</li> </ul>			
거래상 지위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과 협의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지는 않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상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지는 않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가?</li> </ul>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의 위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가?			
	■ 자기가 구입하는 상품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기술의 부당이용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는가?			

\* 작성 요령

○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점검항목에 해당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X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3.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체크 항목		체크결과		
		○	△	X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일정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지키게 하거나, 가격의 인상, 인하율(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등하게 결정·유지·변경케 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거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지급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의 인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A/S의 기간,내용,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공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및 최저 생산량, 필요 재고량 등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간 생산량등 수량의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거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행위 참가업체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행위 참가업체별로 주문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주문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주문 순위·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입찰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거나 사전에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수주활동을 제한, 공동수주 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단가를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입찰에 불참하여 유찰시키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기타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없이 타업체의 영업장소/수/위치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별로 생산품목, 상품의 규격 등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있었는가?</li> </ul>			

\* 작성 요령

○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점검항목에 해당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X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세부체크 항목		체크결과		
		○	△	X
가격남용	■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출고조절	■ 제품의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사업활동 및 신규진입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경쟁자배제 및 소비자 이익저해	■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와 생산량, 가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 또는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 작성 요령

○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점검항목에 해당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X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